

생물안전위원회규정

시행: 2024. 8. 19.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경희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에서 수행하는 생물자원 연구에 대한 위해성 여부 및 과학적 타당성을 평가하여 생물자원 연구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희대학교 생물안전위원회(KHUIBC: Kyunghee University Institutional Biosafety Committee, 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고,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

생물자원의 위해성 평가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「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」, 동법 시행령, 동법 시행규칙, 동법 통합고시 및 「생명공학 육성법 시행령」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「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」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(정의)

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생물체”란 유전물질을 전달 또는 복제할 수 있는 생물학적 존재(생식능력이 없는 생물체,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를 포함한다)를 말한다.

2. “유전자변형생물체”라 함은 다음 각 목의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한다.

가.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

나. 분류학에 의한 과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

3. “생물자원”이라 함은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병원체를 함유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혹은 병원체로 알려진 감염성 물질(미생물, 끄리온 등)을 말한다.

4. “위해성 평가”라 함은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연구에 대하여 인체 및 환경 위해 가능성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.

5. “생물안전”이라 함은 잠재적으로 인체 위해 가능성이 있는 생물체 또는 생물재해로부터 실험자 및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, 그리고 장비 및 시설을 적절히 사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.

제4조(설치)

위원회는 서울·국제캠퍼스에 각각 설치한다.

제5조(구성 등)

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, 생물안전관리책임자 1인, 외부위원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내·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,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② 위원장은 연구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. 단, 미생물 전공자를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생명과학 또는 의과학분야 관련 본교 교수

2. 생물자원 연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외부인사

제6조(기능)

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본교 내에서 수행되는 연구, 실험, 시험 또는 교육에서의 생물자원 연구의 위해성 및 과학적 타당성의 심사 및 승인에 관한 사항

2. 생물안전 교육·훈련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

3. 생물안전관리규정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
4. 생물안전연구시설의 운영 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

5. 연구시설 폐쇄 심의에 관한 사항

6. 기타 본교 내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

② 위원회는 필요시 관련분야 전문가를 초빙하거나 위탁하여 관련 업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제7조(위원장 등의 직무)

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장은 생물자원 연구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책임연구자 및 연구의뢰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.

④ 위원장은 책임연구자나 연구의뢰자가 위원회의 위원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해당 연구와 관련된 사항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제8조(전문위원)

위원회의 각종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.

제9조(회의)

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.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,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, 기타 긴급한 상황 발생 시 개최할 수 있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위임에 의한 표결은 불가하다.

④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·개발 또는 이용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·개발 또는 이용과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.

제10조(심의)

① 본교 내에서 생물자원을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로부터 개발·실험 승인을 받은 후 연구를 개시하여야 한다.

② 본교의 「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[별표1]에 의한 2등급 이상의 연구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야 한다.

③ 위원회는 제6조 제1항의 심의결과를 연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.

제11조(승인의 취소)

위원장은 승인한 생물자원연구계획이 교내 구성원의 건강 및 환경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.

제12조(비밀유지)

위원회의 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3조(심의경비 부담 및 경비지원)

①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구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② 본교는 전문위원의 보수를 포함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위원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4조(운영세칙)

전문위원 임용 등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5월 8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12월 12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6월 2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8월 19일 부터 시행한다.